

[심사결과]

- 심사 대상 청구항 : 제1-4항
- 이 출원의 거절이유가 있는 부분과 관련 법조항
- 순번 거절이유가 있는 부분 관련 법조항
- 1 청구항 전항 특허법 제42조제4항제2호
- 2 청구항 전항 특허법 제29조제2항

[구체적인 거절이유]

1. 이 출원은 청구범위의 청구항 전항의 기재가 아래에 지적한 바와 같이 불비하여 특허법 제4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아 래 -

청구항 제1항은 '~ 이륜차용 다용도 걸이에 있어서,'와 같이 그 말미가 접속형 문장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항 말미를 통해 청구하려는 발명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구항 제1항 및 이를 인용하는 제2항 내지 제4항은 발명의 보호받고자 하는 범위가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이 출원의 청구범위의 청구항 전항에 기재된 발명은 아래와 같이 그 출원 전에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합니다)이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아 래 -

- ◎인용발명1 : 유튜브에 게시된 이륜차용 걸이대(2020. 1. 3.공개)
- ◎인용발명2 : 블로그에 게시된 이륜차용 거치대(2019. 3.12.공개)

가. 본원발명 및 인용발명들의 요지

본원발명과 인용발명들은 오토바이 핸들바에 부가되는 걸이대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동일 기술분야입니다.

나. 청구항 제1항

청구항 제1항의 발명과 인용발명1의 구성을 대비하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구성	청구항 제1항	인용발명1	비고
1	이륜차용 다용도 걸이	오토바이용 봉지걸이 크로스바	동일
2	좌우 양쪽 마스터실린더홀더 상단부에 서포트홀더의 하단부를 서포트 홀더 고정볼트로 체결 연결하고 서포트홀더 중앙에 크로스바를 끼움	오토바이 핸들바에 설치 브라켓을 통해 고정하고 설치 브라켓에 크로스바 설치	일부 차이
3	서포터홀더 상단 윗면에서부터 관통하여 크로스바 고정볼트로 체결 연결	설치 브라켓 상단 윗면에서부터 관통하여 크로스바를 고정볼트로 체결 연결	동일
4	양쪽 서포트홀더에 의해 지지되며 핸들바 위를 수평으로 이루며 지나가는 크로스바 상부에 걸이 핀을 걸이 핀 고정볼트로 체결하여 수직 연결	양쪽 설치 브라켓에 의해 지지되며 핸들바 위를 수평으로 이루며 지나가는 크로스바 상부에 걸이 핀을 걸이 핀 고정볼트로 체결하여 수직 연결	동일

청구항 제1항은 크로스바가 마스터실린더 홀더 상단부에 체결되는 점에서 인용발명1과 차이가 있으나, 인용발명2를 참조하면 오토바이 핸들바 마스터 실린더캡에 크로스바가 설치 브라켓을 통해 설치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고, 인용발명1,2는 오토바이 핸들바에 부가되는 걸이대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공통되므로 인용발명2에 착안하여 인용발명1의 크로스바의 설치 브라켓을 마스터 실린더 홀더에 부가하는 것은 설치 위치의 단순 설계 변경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청구항 제1항의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발명1,2의 결합으로부터 쉽게 발명해 낼 수 있습니다.

다. 청구항 제2항

청구항 제2항의 제1항에서 서포트홀더는 하단부는 마스터실린더홀더 상단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측면에 볼트체결 홈이 있고 중앙에는 크로스바가 끼어질 수 있는 C자 형태로 홈이 나 있으며 중앙에 끼어진 크로스바를 고정할 수 있도록 상단부 윗면에 볼트체결 홈이 수직으로 관통되어 있는 구성은 인용발명2에 착안하여 인용발명1의 설치 브라켓을 마스터 실린더 홀더에 볼트로 고정하고, 설치 브라켓은 크로스바를 고정할 수 있도록 상단부 윗면에 볼트 체결홈이 수직으로 관통 형성된 구성으로부터 쉽게 도출해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항 제2항의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발명1,2의 결합으로부터 쉽게 발명해 낼 수 있습니다.

라. 청구항 제3항

청구항 제3항의 제1항에서 크로스바는 네 면이 각진 형태로 양쪽 끝에는 서포트홀더와 결합될 수 있도록 크로스바 고정볼트를 체결할 수 있는 볼트체결홈이 나 있고 윗면이 평평한 상단부에는 걸이 핀을 고정하기 위한 여러 개의 볼트체결 홈으로 형성된 구성은 인용발명1의 크로스바 양쪽 끝에 설치 브라켓에 고정볼트를 체결 가능한 볼트 체결홈이 나 있고 걸이 핀을 고정하기 위한 다수개의 볼트체결 홈으로 이루어진 구성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청구항 제3항의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발명1,2의 결합으로부터 쉽게 발명해 낼 수 있습니다.

마. 청구항 제4항

청구항 제4항의 제1항에서 걸이 핀은 크로스바의 홈에 볼트로 돌려끼워질 수 있도록 중앙에 볼트체결 홈이 나 있으며 나사모양의 머리턱을 가진 구성은 인용발명1의 걸이 핀은 크로스바의 홈에 끼워질 수 있도록 중앙에 볼트가 체결되고 나사모양의 머리턱을 가지는 구성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청구항 제4항의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발명1,2의 결합으로부터 쉽게 발명해 낼 수 있습니다.

[첨 부]

첨부1 유튜브에 게시된 이륜차용 걸이대(2020. 1. 3.공개)

첨부2 블로그에 게시된 이륜차용 거치대(2019. 3.12.공개) 끝.